# 1. 주요 알림 사항(1)

<승인 및 통보사항>

## • 예산 변경

- 비목 간 변경 ▶ **변경허용**
  **비목간 변경은 20%이내에는 자체 내부승인가능, 20%이상은 전력연구원 승인**
- 세목 간 변경 ▶ **'산학협력단' 내부 승인**

※ **국외 여비, 회의비, 연구 수당, 간접비 제한 (최초 계상 범위 내 정산)**
※ **현물 총금액이 변경도면 협약서 변경사항**

## • 참여 연구원 변경

- 참여연구원 변경 ▶ **책임연구원이 변경될 때 '전력연구원 ' 승인**
- 참여율 변경 ▶ **'산학협력단' 내부 자체승인**

**인건비의 20%이하로 변경되었을 경우 보안 서약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재학증명서 첨부하여 '전력연'통보**



# 2. 연구비 사용기준(1)

## • 관련규정

- 협약서 및 시방서, 계획서
- 사외공모 기초연구비 산정 및 집행기준
-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

## • 공통주의사항

- 연구비는 산학협력단 법인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
- 토,일, 공휴일 및 심야(23시~6시)시간 연구비 카드 사용 금지
- 연구 종료 기간에 임박하여, 연구비 소진을 목적으로 재료, 소모품, 도서 등을 대량 구입할 경우 정밀 정산 대상
- 적격증빙 구비
- 환급가능한 부가세는 집행액에서 제외
- 간접비의 경우 직접비 집행률에 따라 정산

# 2. 연구비 사용기준(2)

• **인건비**
- 교수인건비는 현물계상, 연구책임자의 참여율은 30%이상
- 기타 참여 연구원의 참여율은 10%이상
- 소속이 없는 휴학, 졸업생의 경우 참여 불가
- 개인별 참여율 100% 이내(연구협력자의 참여율은 관리 불필요)
- 참여 연구원 개별 계좌로 이체

• **연구장비재료비**
- 연구장비 및 기기등 기자재 구입은 원칙적 불가 (거점대 가능)
- 소프트웨어 및 범용성 장비( PC,프린터, 복사기등 사무용기) 구입 불가
- 시작품의 경우 연구 종료 2개월 전 검수 완료

KEPCO 전력연구원

# 2. 연구비 사용기준(3)

• **국내·외 여비**
- 산학협력단의 규정 준수
- 학회등록비에 식비가 포함되었거나 출장지에서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, 해당분은 식비에서 차감하고 지급
- 기내식이 있을 경우 식비 차감

• **수용비 및 수수료**
- 과제와 관련 없는 비소모성 품목 구입 지양
- 공공요금의 경우, 실 집행 공공요금의 총원 대비 당해 과제 참여 인원의 해당 참여율 분으로 신청
- 최근 감사 시, 소모품에 대한 검수 여부가 주요 이슈 사항이므로 검수서 구비

KEPCO 전력연구원

# 2. 연구비 사용기준(4)

- **기술정보활동비**
  - 교육훈련비 및 학회참가비의 경우 일정, 참가 영수증, 교육이수 확인증 등 관련 증빙 첨부
  - 연회비 사용 불가(단, 논문 게재를 위해 연회비 납부가 필수일 경우 해당 내용을 첨부하고 사용)
  - 문헌구입비는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서적에 한해서 구매
  - 전문가 활용비 지급은 산학협력단 규정

# 2. 연구비 사용기준(5)

- **회의비**
  -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외 외부기관 인사 참여 필수
  - 참석자 전원 서명록
  - 회의 장소와 식사 장소가 원거리 일 경우 사유서 첨부
  - 주류가 포함 되어 있을 경우 회의비 전액 불인정
- **연구수당**
  - 참여연구원 1인에게 50%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
  - 각 참여연구원이 받은 인건비 총합의 50%내에서 지급
  - 지급시기 변경 (당해연도 수행기간 종료 후 지급)-2018.12.13산자부요령

# 3. 연구비 사용 주요증빙(1)

**• 기본적 증빙**

- 지출결의서
- 카드매출전표, 계좌이체내역서, 세금계산서, 구매확인서, 거래명세서
- 견적서, 계약서, 청구서



# 3. 연구비 사용 주요증빙(2)

**• 연구시설.장비 및 재료비**

- 카드매출전표(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)
- 거래명세서
- 구매의뢰서
- 견적서
- 검수확인서
- 외자구매(국외 수입)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
-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
  · 단, 거래처의 재무제표 확인원, 부가가치 과세표준증명원 등 요청 시 제출필요
-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, 시험분석 결과서 첨부

# 3. 연구비 사용 주요증빙 설명(3)

## <적격증빙 구비 사례-Best Practice>

- 인건비
  현물출자확인서, 재학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- 연구시·설장비 및 재료비
  지출결의서, 세금계산서, 검수확인서, 검수사진, 견적서(및 계약서),
  시험분석 결과서, 수입신고서류

- 회의비
  회의록 및 참여자 전원 서명록

# 3. 연구비 사용 주요증빙 설명(4)

## <적격증빙 구비 사례-Best Practice>

- 연구활동비 (국외출장비)
  - 전력연구원 승인공문(출장자, 기간, 장소, 목적, 여비산출내역, 세부일정포함)
  - 증빙에 여비산출내역, 일정(항공일정포함)

- 연구활동비(소모품)
  기본적 증빙 외 검수확인서 및 검수사진

- 연구수당
  기여도 평가서(연구수당 지급시기 주의)

Cf) 토너 및 전산용지는 재료비로 분류

# 3. 연구비 주요 불인정 사례(1)

**연구수당 한도초과**

•연구수당은 인건비(현물, 현금 및 학생인건비 포함)의 20%이내이어야 함
ex)총 인건비 204,916,000원의 20% 는 40,983,200원임. ( 42,802,200원-40,983,200원=1,819,000원)
• 참여연구원 1인에게 50%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
ex)연구수당 총액 7,984,4000임. XXX님께 지급된 금액 7,345,280/ 연구수당 총액의 50% 초과금액 불인정

**회의비**

-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외 외부기관 인사 참여 필수 (연구팀 : A대학 + B대학, A대학연구비지출시 B대학소속 외부기관 인사)
- 협약서 최초 계상금액 초과분
- 23시 이후 이용, 토요일 사용
- 회의 참여자가 서울과 대전 근무자→ 영수증은 제주도 (사유서가 있어도 불인정)

**국외여비**

- 최초 계상 범위 초과

**특허출원료**

- 특허출원비용 계상금지

# 3. 연구비 주요 불인정 사례(2)

**간접비 한도초과 :** 예시(직접비 집행율에 따라 간접비 정산)

| 예산 | 금액 | 집행액 | 집행잔액 | 불인정금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인건비(현물): A | 21,564,000 | 21,564,000 | 0 | |
| 인건비(현금): B | 27,600,000 | 27,600,000 | 0 | |
| 재료비 : C | 953,843 | 653,843 | 300,000 | |
| 연구활동비: D | 7,810,157 | 7,810,157 | 0 | 1,000,000 |
| 연구수당 : E | 9,091,000 | 9,091,000 | 0 | |
| 간접비 : F | 4,545,000 | 4,545,000 | 0 | |
| 현금 | 50,000,000 | | | |

**간접비 한도초과 계상**

| 계산내역 | 금액 | |
|---|---|---|
| 직접비 한도 | 45,454,545 | =(B+C+D+E+F)/1.1 |
| 간접비 한도 | 4,545,455 | =직접비 10% |
| 직접비집행금액 | 44,155,000 | =집행액-불인정금액 |
| 직접비 집행율 | 97.1410% | =44,155,000/(B+C+D+E) |
| 직접비 집행율에 따른 간접 한도 | 4,415,500 | =4,545,455*97.141% |
| 간접비한도초과 | 129,500 | =4,545,000-4,415,500 |

# 3. 연구비 주요 불인정 사례(3)

**환급가능한 부가가치세**

- 공급가액만 연구비 지출액으로 계상

| 구분 | 지원금액 | 정산방법(ex. 회의비 55,000원 지출) |
|---|---|---|
| 연구비 | 50,000,000 | 연구비 집행금액 : 50,000 |
| 부가가치세 | 5,000,000 | 부가가치세 : 5,000 (부가가치세 신고시 산학협력단이 매입세액공제 받음) |

**부가가치세 한도초과(반납금액의 10%)**

- 부가가치세는 별도 정산 사항임
- 반납금액의 10% : (집행잔액+불인정금액) X 10%
  - 계산방법 (40,000,00집행, 1,000,000원 불인정 경우)
    [5,000,000-(40,000,000-1,000,000)X10%]=1,100,000 : 부가가치세 한도초과
- 반납시 수정세금계산서(-)세금계산서:
  - 공급가액 (-)11,000,000 부가가치세 (-)1,100,000

# 4. 연구비 증빙 시스템 업로드 Best Practice (1)

**• 기타첨부파일**

1. 사업계획서 &협약서 및 시방서
2. 사업실적보고서의 집행내역 (Excel)-자체정산ㅅ
3. 인건비증빙서류(일괄)
4. 승인공문
   - 국외출장결과보고서/승인공문(일괄가능)
   - 연구개발비관련승인통보내역
5. 각종규정
   - 여비규정
   - 수행기관 전문가활용규정
6. 계산내역
   - 총괄계좌집행내역(또는 통장지출내역)
   - 이자계산내역

# 4. 연구비 증빙 시스템 업로드 Best Practice (2)

- 개별증빙업로드
  - 증빙 중복 업로드 지양
  - 1집행 1증빙
  - 일괄증빙업로드 문제

KEPCO 전력연구원

# 4. 연구비 증빙 시스템 업로드 Best Practice(3)

- 합계자체검증

  -엑셀다운로드
  - 사용실적보고서와 합계검증 (세목 및 총액)
    인건비
    연구시·설장비 및 재료비
    연구활동비
    연구수당
    간접비

KEPCO 전력연구원

## 5. 정산자료제출안내

-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안내예정
- 정산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안내 예정

- 문의 사항 (010-7716-3355 정산팀업무용Mobile, 02-566-4126)

## 6. Q&A

# Q&A